

2022 년 12 월 23 일

전쟁위험 담보 관련 해지 통보

본 회람은 다음에 적용됩니다:

- Club 의 *용선자책임보험(Charterers' Liability Insurance)*에 가입된 피보험자
- *Rules of Class 3* 및/또는 Club 의 *용선자책임보험(Charterers' Liability Insurance)*에 가입된 피보험자로서 Club 의 *추가보험(Additional Insurances)*에 가입된 Member
- *Rules of Class 3*에 가입되어, *가입증서(Certificate of Entry)* 상에 Non-Poolable 인 담보가 포함된 Member

아래의 조항에 따라:

- *용선자책임보험(Charterers' Liability Insurance)*의 Part III Clause 1.4 – Club 은 Part III Clause 1.5.1 에 따른 7 일전 통보를 드립니다; 및/또는
- *추가보험(Additional Insurances)*의 Part III Clause 1.4 – Club 은 Part III Clause 1.5.1 에 따른 7 일전 통보를 드립니다; 및/또는
- *Rules of Class 3* 의 Rule 25(2)(i) – Club 은 7 일전 통보를 드립니다

전쟁위험 등의 담보가 해지됩니다. 이러한 통보는 그리니치 표준시로 2022 년 12 월 24 일 24:00 부터 기산되어 그리니치 표준시로 2023 년 1 월 1 일 00:00 에 발효됩니다.

아래의 조항에 따라:

- *용선자책임보험(Charterers' Liability Insurance)*의 Part IV Clause 6.2
- *추가보험(Additional Insurances)*의 Part IV Clause 6.2
- *Rules of Class 3* 의 Rule 25(2)(i)

Club 은 그리니치 표준시로 2023 년 1 월 1 일 00:00 부터 전쟁위험 등의 담보를 복원하는데 동의합니다만, 아래의 경우로 인한 손실, 손해, 책임 또는 비용의 담보는 제외됩니다:

-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분쟁 및/또는 그러한 분쟁의 확대로 인해 발생하거나 관련된 경우; 또는
- 러시아군, 러시아지원군 및/또는 러시아당국이 러시아연방, 벨라루스, 우크라이나 및 관련 분쟁지역(우크라이나, 크림반도 및 몰도바공화국)의 영토(영해 포함) 내에서 분쟁을 벌이고 있는 모든 지역, 영토 또는 영해인 경우.
- 러시아연방, 벨라루스, 우크라이나 및 관련 분쟁지역(우크라이나, 크림반도 및 몰도바공화국)의 영토(영해 포함)에서, 선박과 화물의 나포, 압류, 체포, 억류, 몰수, 국유화, 수용, 소유권이나 사용의 박탈 또는 징발, 운송 제한하는 경우

참고 사항

Member 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에 전개되는 상황과 재보험시장의 반응을 인지할 것입니다. Club 의 재보험자가 Non-Poolable 의 재보험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Club 에 해지 통보를 했으며, 이는 Club 이 Member 와 피보험자에게 해지 통보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. IG Group 의 다른 Club 도 이미 해지 통보를 했거나 통보할 것입니다.

기타 사항

본 회람과 관련하여 질의 사항 있으시면, Club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